

## 강사료 지급 규정

2003. 06. 27. 전면개정	2014. 08. 01. 부분개정	2019. 10. 01. 부분개정
2009. 08. 01. 부분개정	2015. 05. 01. 부분개정	2023. 04. 01. 부분개정
2010. 12. 07. 전면개정	2016. 08. 22. 부분개정	2024. 10. 01. 부분개정
2012. 04. 01. 부분개정	2017. 11. 01. 부분개정	2025. 08. 01. 부분개정
2012. 06. 01. 부분개정	2018. 03. 01. 부분개정	2026. 01. 01. 부분개정
2013. 03. 01. 부분개정	2019. 08. 09. 부분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의의 구분)** 본교의 강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실험, 실습, 실기 및 임상실습 등의 지도와 시험을 실습강의라 한다.
- ② 본 대학 전임교원의 평상수업을 일반강의라 한다.
- ③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
- ④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
- ⑤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필요시 특별강사를 초빙하여 시간강의를 하는 경우를 특별강의라 한다.
- ⑥ 위의 강의 중 특별강의를 제외한 수업의 수강인원이 70명 이상의 수업을 대단위강의라 한다.<개정 2015.05.01.>

**제3조(강의 책임시수)**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9시간, 초빙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초빙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03.01., 2019.08.09., 2026.01.01.>

**제4조(책임시수의 일부면제)** 보직을 가진 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보직을 겸직하였을 때에는 적은 책임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책임시수를 전부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강사료의 계산)** 1주단위로 시간수를 계산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단, 신분변동 시는 일할 계산 한다.

- ① 특별강의는 필요한 경우는 2주전에 승인받아, 실시 후 지급한다.

**제5조의2(원격수업 시수인정 및 강사료)** ①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의 “원격수업” 교과목 담당자 강의 시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

1. 원격수업 교과목을 개발 개설하는 경우 100%를 인정한다.
2. 외부 콘텐츠를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개설하는 경우 활용비율에 따라 시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② 원격수업의 경우 분반이 허용되지 않으며, [별표4]의 대단위 강사료 지급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타대학 학점교류과목(글로벌대학30프로젝트 운영 교과목 포함)은 예외로 한다.
- ③ 원격수업의 경우 수강 정원은 최대 100명으로 하되 수업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원격수업의 폐강기준 등은 「교과배정 지침」을 준용하며, 기타 시수 및 강사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8.01.]

**제6조(강사료 지급기준 및 대상)** 초과강의와 시간강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강사료를 지급한다.<개정 2015.05.01.>

1. 초과강사료는 주당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전임교원 및 초빙교원에게 초과된 시간수에 따라 초과강사료를 지급하되, 지급우선순위는 강사료 단가가 높은 순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08.09.>
2. 시간강사료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한 자에게 시간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3. 특별강사료는 강의실시 후 지급한다.
4. 야간 학과, 전공심화과정 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 학과의 야간 수업 또는 토요일 수업을 전임교원이 실시한 경우 「별표3」식대 보조비 지급 기준액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04.01.>

**제7조(지급 기준액)** 강사료의 지급액은 강의에 따라 다음과 각 호같이 구분한다.

1. 대단위강의를 제외한 시간당 강사료는 「별표2」강사료 지급 기준액에 따라 지급 한다.
2. 대단위강의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는 「별표4」대단위강의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한다.<개정 2015.05.01.>

**제8조(지급일)** 강사료의 당월분은 강의가 끝난 25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당해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9조(시행세칙 등)**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사료산정기준) 2000학년도 제2학기 강사료 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전임교수 초과강사료의 산정방법은 주·야간 강의가 있는 경우, 책임시수를 공제함에 있어서 주간 시수를 먼저 공제하고, 주간 시수가 책임시수에 미달할 시 야간시수를 공제하여 잔여시수를 초과시수로 계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지급분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3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강사를 대상으로 소급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지급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지급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 제2호의 규정은 2015년 3월분 강사료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7년 9월분 강사료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분 강사료 지급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강사료 지급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제4호, 별표 2(강사료 지급 기준액) 및 별표 3(식대 보조비 지급 기준액)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강사료 지급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강사료 지급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직 교원의 주당 책임시수<개정 2013.03.01., 2016.08.22., 2019.10.01., 2023.04.01.>

구 분	책임시수
부총장, 부속유치원장	3
대학본부 실장 및 처장, 산학협력단장	6

[별표 2] 강사료 지급 기준액<개정 2015.05.01., 2017.11.01., 2019.08.09., 2019.10.01., 2023.04.01.>

■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구 분	강 사 료(원)	비 고
주간 분반	17,000	
주간 합반	20,000	재이수를 제외한 수강인원 46명 이상인 경우 합반강사료 지급
야간 분반	20,000	
야간 합반	22,000	
외국인교원 (비정년트랙)	20,000	외국인교원 중에서 비정년트랙만 해당함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25,000	
전문기술석사과정	30,000	

■ 강사 강사료

구 분	강 사 료(원)	비 고
일반	30,000	
의사면허	35,000	한 의사, 수 의사 포함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특별강사	100,000	5주 이내까지 가능

■ 겸임교원 강사료<개정 2023.04.01.>

구 분	강 사 료(원)	비 고
일반	35,000	
의사면허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40,000	한 의사, 수 의사 포함

■ 초빙교원 초과강사료<개정 2026.01.01.>

구 분	강 사 료	비 고
기본급	연봉으로 지급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	연봉에는 제3조에 따른 주당 책임시간에 해당하는 수업시수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초과시수	60,000	강의전담초빙교원에 한함

■ 특임교원 강사료<신설 2024.10.01.>

구 분	강 사 료(원)	비 고
일반	30,000	

[별표 3] 식대 보조비 지급 기준액<개정 2023.04.01.>

대상 학과	대상 수업	금액	지급대상
야간 학과, 전공심화과정 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 학과	야간 또는 토요일 수업	금일만원 (₩10,000원)	전임교원

[별표 4] 대단위강의 강사료 지급 기준<개정 2015.05.01.>

구분(수강인원, 명)	강사료(별표2강사료 기준)
70 ~ 99	1.5배
100 ~ 129	1.7배
130 ~ 159	1.9배
160 ~ 189	2.1배
190 ~ 219	2.3배
220이상	2.5배